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심장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의료 장비인 자동제세동기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가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으나,
- 체력단련장, 목욕장 등 심장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는 의무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의 미비와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권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동

제세동기의 설치 장소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용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인 “자동제세동기”로 수정함(안 제2조)
- 시장이 수립하는 응급의료 시행계획중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응급의료 기금의 운용계획”을 삭제함(안 제3조)
- 응급의료시행계획에 자동제세동기의 연도별 설치·점검계획, 응급처치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
-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대상을 추가함(안 제5조)
- 시장이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 시장이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관리자가 아닌 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응급장비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제세동기의 연도별 설치·점검 계획

7.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각각 “자동제세동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4 그 밖에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의 제목 “(설치 및 권장)”을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을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설치비용 지원 시”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자동제세동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응급장비 관리) ①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응급장비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시 관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 설치일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정보를 소방안전본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시 관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자동제세동기 관리 책임자와 해당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을 원하는 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응급장비 등 홍보)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1. “자동제세동기”란-----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3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3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응급의료기금의 운용계획</u>	<u><삭 제></u>
<u><신 설></u>	6. 자동제세동기의 연도별 설치·점검 계획
<u><신 설></u>	7.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7. <u>기타</u>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책	8. <u>그 밖에</u> -----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u>자동심장충격기</u> 의 설치	1. <u>자동제세동기</u> -----
2. <u>자동심장충격기</u>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u>자동제세동기</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u>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u>) <u>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5조(<u>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대상</u>) <u>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보건소 등</u>	1. 「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u> 」에 의한 <u>체력단련장업</u>
2. <u>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u>	2. 「 <u>공중위생관리법</u> 」에 의한 <u>목욕장업</u>
3. <u>설치 권장 시설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u>	3. 「 <u>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u> 」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4. 그 밖에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시설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설치비용 지원 시 -- 자동제세동기-- -----.
제7조(응급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 관리) ----- -----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 ----- ----- -----.
<신 설>	② 시장은 인천시 관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 설치일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정보를 소방안전본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인천시 관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

	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시민에게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자동제세동기 관리 책임자와 해당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

<신 설>	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응급장비 등 홍보)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별첨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자동제세동기 설치 권장 : 조례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3. 미첨부 사유

-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재원 100%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가격이 사양별, 크기별로 다양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심 재 봉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6조(재정 지원)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